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657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민홍철·문대림·조 국

이기헌 • 허성무 • 백혜련

한정애 · 정준호 · 이건태

이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,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 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,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지방소멸 등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달리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노력 규정을 두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4항 및 제32조의2 신

설).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 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2조의2(우수사례의 발굴·확산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발굴·포상·홍보
 - 2.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
 - 3.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
 - ③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

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~ ③	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
	<u>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</u>
	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
	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
	<u>한다.</u>
<u><신 설></u>	제32조의2(우수사례의 발굴·확산)
	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
	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
	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
	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
	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
	<u>노력하여야 한다.</u>
	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
	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
	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
	<u>수 있다.</u>
	1.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
	전 우수사례 발굴·포상·홍보
	2.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
	전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
	미나 개최

- 3.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

 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

 사업 지원 등
- ③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.
 ④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